

국회도서관 직제

[시행 2010.4.27.] [국회규칙 제155호, 2010.4.27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국회도서관법」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, 직위에 대한 직급,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,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하부조직) ① 국회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에 의회정보실·정보관리국·정보봉사국 및 국회기록보존소를 둔다.

② 국회도서관장(이하 "도서관장"이라 한다)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.

③ 실·국 및 관(이하 "실·국"이라 한다)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.

제3조(공무원의 정원)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정원에 관한 특례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 동안 해당 휴직자의 계급 상당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제5조(기획관리관)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.

1. 업무계획의 수립·종합 및 조정
2.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
3. 조직 및 정원 관리
4. 도서관 소관 규칙·규정·내규 등의 제정·개정 등에 관한 사항
5. 감사·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
6.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
7. 직원의 교육훈련·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
8.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9. 보안 및 관인의 관리
10. 공무원의 임용·복무·상벌·연금·건강보험·그 밖의 인사관리
11. 예산의 집행 및 결산
12. 물품관리·조달 및 검수
13.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
14. 다른 실·국(국회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)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15.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

제6조(의회정보실)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두고, 실장 밑에 의회정보심의관 1인을 둔다.

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, 의회정보심의관은 이사관·부이사관·공업부이사관·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0.4.27.>

1.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
2.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·대외협력·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
3.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
4.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5. 법률정보의 조사·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
6.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
7.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8. 국외자료의 조사·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
9.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0.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
11.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
12.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
13.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14. 그 밖에 법률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- ④ 의회정보심의관은 의회정보지원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제7조(정보관리국) ① 국장은 이사관·공업이사관·정보관리이사관·부이사관·공업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
2.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
4. 메타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
5.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
6.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
7.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
8.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
9. 도서관자료의 목차·초록·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
10. 전자자료의 수집·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
11. 석·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
12.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
13. 인터넷자료의 수집·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
14.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
15. 주전산기·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6.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7. 전산관련기기의 설치·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
18.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

제8조(정보봉사국)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장서개발·자료조직·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
2. 도서관자료의 선정·구입·납본·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
3. 국내외 대학·협회·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
4.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
5.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
6. 도서관자료의 열람·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
7.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
8. 열람실·자료실·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9.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

제9조(국회기록보존소) 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0.2.24.>

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0.4.27.>

1. 국회기록물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
2. 국회기록물의 수집·보존·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3.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4.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
5. 도서관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
6.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원·복제·제본
7.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
8. 전자기록물의 평가·폐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
9.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
10. 국회 관련 행정박물 등의 보존에 관한 사항

제10조(계약직공무원의 활용)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, 국외자료 조사·번역, 정보시스템 운영,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11조(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)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12조(기능직공무원정원의 통합관리) 직무의 종류·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 기능 7급·기능 8급·기능 9급 및 기능 10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위임규정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.

부칙 <제155호, 2010.4.27>

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